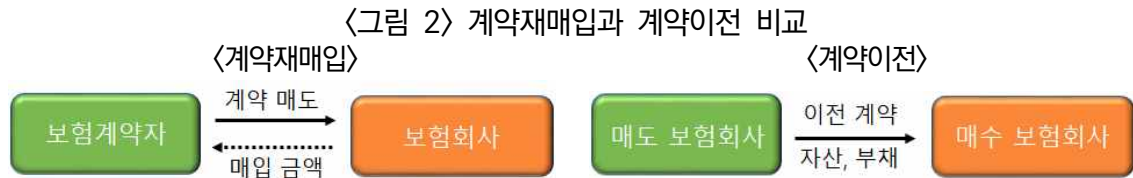


- (계약재매입)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판매한 계약을 다시 매입하여 보험계약을 종료하는 것임
 -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장부가치(해약환급금)에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불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계약을 매입함
 - 벨기에 생보사는 고금리 계약에 대해 10%~30%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계약을 매입하였으며 프리미엄 제시 후 일정기간(1~3개월) 보험계약자의 신청을 받는 형식으로 처리됨

- (계약이전) 이전 대상 계약의 자산과 부채를 타 보험회사에게 이전함
 - 이전 대상계약 계약자 총수의 1/10 또는 보험금 총액의 1/10을 초과하여 이익을 제거하면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함
 - 대만 알리안츠는 적용이율 4% 이상인 보유계약을 대만 중국생명에 이전하였음



- 보험회사는 거래 주체, 계약유지, 계약자 동의에 따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음
 - 재보험사, 원수사, 보험계약자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, 계약은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, 계약자 동의를 받을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회사 상황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

〈표 1〉 부채구조조정 방안별 비교

구분	공동재보험	계약자매입	계약이전
거래 주체	원수사 ↔ 재보사	원수사 ↔ 보험계약자	원수사 ↔ 원수사
계약유지 여부	○	X	X
계약자 동의 여부	X	○	△

-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충분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부채구조조정 방안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

노건엽 연구위원
gynoh@kiri.or.kr